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처분 취소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 원 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9구합○○○ [1심]	사건유형	영업허가취소정지
원 고	□□□	피 고	인천광역시○○교육지원청교육장
판결선고일	[1심]2020. 5. 21. 원고승소	비 고	
사건개요	❍ 원고는 2014. 2.경부터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하1층, 지상6층 건물 중 지상4층 전부에 만화대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, 2019. 1. 29. 피고에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만화방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하였음. ❍ 피고는 2019년 제2차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. 2. 18. 원고에게 이 사건 만화방이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음. ❍ 원고는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며 및 재량권의 일탈·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.		
주 문	1. 피고가 2019. 2. 18.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		
청구취지	주문과 같다.		
판결이유	❍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- 교육환경법 제9조 본문 제28호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·위생, 안전,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'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6)에 해당하는 업소'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,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위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위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6)은 '회비 등을 받거나 유로로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업'을 청소년유해업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. 위 각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만화대여업을 영업하기 위한 시설인 이 사건 만화방 자체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서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시설로서 원칙적으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 사건 만화방에 대하여 해당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 ❍ 재량권의 일탈·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-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거나 계속하여 금지(제외거부)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, 그 조치가		

	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,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,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, 학교주변의 환경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·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.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 ① 이 사건 초등학교 학생들 거주지의 위치와 거주지로부터 이 사건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횡단보도 등 보행환경, 이 사건 초등학교 출입문의 위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앞길이 이 사건 초등학교 학생들의 주된 통학로로 이용되지는 않아 보임. ② 원고는 2014. 2.경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19. 2. 18.까지 약 5년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만화방을 계속하여 운영해 왔는데,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이 이 사건 만화방을 빈번하게 출입하여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. ③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위원들이 이 사건 건물 주변에 거주하면서도 이 사건 만화방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, 피고가 이 사건 만화방을 단속하게 된 경위도 이 사건 건물 2층의 다른 시설에 대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관련 현장실사를 나갔다고 우연히 이 사건 만화방의 존재를 인지한 것에 기인한 것임. ④ 이 사건 초등학교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사건 중학교의 학교장은 의견서에서, ‘실사 결과 이용고객은 성인들이었으며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’는 의견을 개진함. ⑤ 이 사건 만화방의 실내 환경이 보건, 위생, 안전 등의 측면에서 열악하다거나 불량한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 내지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는 높지 않아 보임. ⑥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는 이 사건 만화방과 같은 만화대여점의 정화 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출입경험률은 다른 유해업소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, 유해인식도도 높지 않았음. ⑦ 원고는 상당한 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만화방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바,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 측면은 어느 정도 공감되기는 하지만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오랫동안 운영하였던 이 사건 만화방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될 재산권의 침해 정도보다는 낮아 보임.
결 론	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